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523536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윤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10,280원 및 그 중 162,951,910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90,000,000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2,564,1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72,564,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90,000,000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4.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8.(이후 보증금액을 161,5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4. 3.로 각 변경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당시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본인(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피고 B)은 그 대위변제금(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을 상환하고, 위 피고들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2020. 3. 4. 당시의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8%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2020. 4. 3.경부터 D은행에 대하여 원금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행이 2020. 5. 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20. 7. 17. D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62,951,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 1,058,370원 $\{=161,500,000\text{원} \times 2.3\% \times 104/365(2020. 4. 4. \sim 2020. 7. 16.)\}$ 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및 증여

1) 피고 B은 2019. 10. 24. 소외 E과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20. 1. 7. E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는 위 아파트에 담보설정되어 있던 은행채무를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290,000,000원은 처인 피고 C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C는 위 송금받은 돈으로 제1 부동산 부근에 있는 서울 노원구 F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10,280원 $\{=162,951,910\text{원(대위변제금)} + 1,058,370\text{원(미수위약금)}\}$ 및 그 중 162,951,9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0. 27.까지는 연 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상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2019년말 현재 부채가 180,000,000원이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가 원고의 유예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규정 문언 그대로 원고의 재량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피고 C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처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B이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 290,000,000원을 특수한 신분관계(부부관계)에 있는 피고 C에게 그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중 원고의 2021. 1. 26. 기준 피고 B에 대한 채권 172,564,1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만일 피고 B이 피고 C에게 증여한 290,000,000원이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라 할 경우에는 290,000,000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1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이 돈을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

가) 피고 B이 2020. 1. 7. 피고 C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2019. 8.경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이므로 증여가 될 수 없고,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그 증여는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행위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설령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존재 및 피고 B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10. 24.로부터 약 5개월, 피고 B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29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증여한 2020. 1. 7.로부터 약 3개월만인 2020. 4. 3. 피고 회사가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D은행에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여부

(1) 적극재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 10. 1.에서 2020. 1. 7.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 B이 2019. 10. 24. 소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처분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그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290,000,000원의 채권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날인 2021. 1. 7.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29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위 290,000,000원이다.

(2) 소극재산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20. 1. 7.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	채권액	
1	J은행	10,000,000	I기관
2	K은행	4,783,000	I기관
3	L	15,280,000	I기관
4	D은행	7,562,000	I기관
5	M카드	7,000,000	I기관
6	D은행	7,048,000	I기관
7	원고	164,010,280	갑제1~3호증
8	기업은행	99,000,000	I기관
	합계	314,683,280	

(3) 채무초과 상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1. 7.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받은 매도대금을 부부기간인 피고 C에게 지급한 것(매도인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이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B은 당시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위 매매대금 290,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 B의 적극재산이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피고 B의 소유인바, 이와 같이 피고 B이 그 소유의 매각자금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서 피고 C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증여라고 할 것이고, 다만 증여가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연 피고 B의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보건대,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20. 9. 29.경 피고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961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실, 2020. 11. 4. 위 법원은 “1. 피고 C와 피고 B은 이혼한다. 2. 피고 B이 피고 C에게 2020. 1. 7. 재산분할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양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0. 11. 24.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 제5, 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8.경 피고 B에게 대출금 상환 계획,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 및 처분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불과 2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9.경 피고 C가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② 피고 C는 피고 B의 계속되는 가정경제 파탄과 성격 차이로 인하여 2019. 8.경 피고 B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서 피고 B의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남는 돈 2억 9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피고 C가 갖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 2억 9,000만원을 사용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부근에 소재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20. 1. 7. 무렵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C는 피고 B이 당초 합의와 달리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청구 외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제기한 것과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위 소송절차를 보면, 피고 C가 소를 제기한 후 피고 B이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자 법원에서 바로 화해권고를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양당사자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9,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제기 시점, 그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청구를 모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곧바로 확정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피고 C의 위 재산분할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의의 항변

피고 C는 또,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 B에게 N회사와 O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피고 B은 을다 제11, 12호증의 대출조회서만 줄 뿐 다른 채무는 없다고 다짐을 받아 원고의 채권의 존재 및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 C와 피고 B은 부부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2억 9,000만원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최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데(대법원 2000다66416 판결,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해서 164,010,280원 및 그 중 162,951,910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2021. 1. 26.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 채권은 172,564,138원이 된다(164,010,280원+이자 8,553,858원).

※ 이자계산내역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억 9,000만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172,564,138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72,564,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